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07
----------	-----

2017. 6. 15.(목)  
건설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31일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6월 15일

(제35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김희수)

가. 제안이유

- 법률의 근거 없이 건설공사 품질시험의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, 위반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함

## 나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제명 및 조문 변경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
  - 「건설기술관리법」 →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- 제4조(시험의 이용제한) 규정 삭제
  - 상위법령 위임 근거 없음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경형)

#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, 법령의 위임없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[시행 2014.5.23.] [법률 제11794호, 2013.5.22., 전부개정]으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제1조, 제2조 등의 근거규정을 변경하고,
- 법령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4조를 삭제하여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

- 입법예고('17. 4. 21. ~ '17. 5. 11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고, 법령의 위임없는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」 제41조를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3조로 한다.

제2조 중 「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」 제41조제1항을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」 제53조제1항으로 한다.

제4조를 삭제하고,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6조까지로 한다.

제5조(종전의 제6조)제1항 중 “제5조”를 “제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방세 체납처분의 예”를 “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납처분의 예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및 「<u>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</u>」 제41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----- 「<u>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</u>」 제53조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수수료) ①품질시험 및 검사수수료는 「<u>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</u>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산출하고,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2조(수수료) ①----- ----- 「<u>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</u>」 제53조제1항----- -----</p>
<p>제4조(시험이용의 제한) ① 품질시험 및 검사의뢰자는 성과표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기타 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가 있을 때에는 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	<p>② (현행과 같음) &lt;삭 제&gt;</p>
<p>제5조 ~ 제7조 (생 략)</p>	<p>제4조 ~ 제6조 (현행 제5조부터 제7조와 같음)</p>
<p>제6조(수수료의 징수) ① 제5조에 따라</p>	<p>제5조(수수료의 징수) ① 제4조 -----</p>



## 관련법령 발취

### □ 건설기술진흥법

**제56조(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)**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"품질관리비"라 한다)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### □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

**제53조(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)**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(이하 "품질관리비"라 한다)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. 다만,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·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
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,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